

2023 예산 · 정책 이슈

Budget · Policy Issue

이번달 주제 : 전환사업 제도

- 전환사업 배경 및 법률근거
- 전환사업 보전 기준 및 보전 방법
- 전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전환사업 성과평가 기준
- 전환사업 예결산 심의 활용 포인트

정책 동향

-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 (기경위)
-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 일본 미야코노조시 고향 납세 제도 (행문위)
- 앤데믹 시대, 장애인 돌봄의 한계와 향후 돌봄의 방향 (북한위)
-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농해위)
-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방안 (건소위)
- 학생의 심리정서 성장 지원을 위한 과제 (교육위)

충남도청 자체수입 징수현황('23. 9월말 기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I. 이번달 주제: 전환사업 제도

- ① 전환사업 배경 및 법률근거
- ② 전환사업 보전 기준 및 보전 방법
- ③ 전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④ 전환사업 성과평가 기준
- ⑤ 전환사업 예결산 심의 활용 포인트



1. 전환사업 배경 및 법률근거

1 전환사업 배경

-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이라 함)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이하 “전환사업”이라 함)
 - 1단계 전환사업 : 보전규모 약 3.56조원, 13개 부처 39개 세부사업
 - 2단계 전환사업 : 보전규모 약 2.25조원, 12개 부처 41개 세부사업
-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26년)
 - 자치단체에서 적정 수준의 전환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 법률 근거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 *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원 배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용도에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추가하며, 세부적인 보전방안에 대하여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예규)」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평가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

붙임1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흐름

(국 세) 부가가치세 총액의 21% **세무서장·세관장**

↓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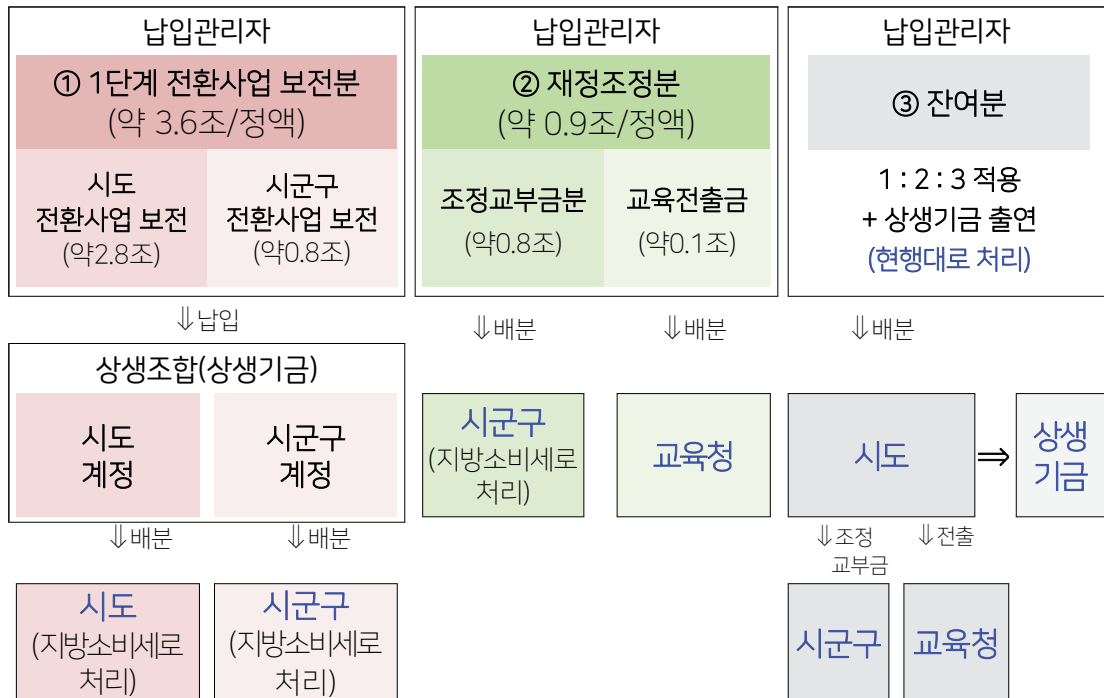
(지방세) 지방소비세 21% **납입관리자**(1년 단위로 1개 시·도 지정)

※ 지방소비세 세율 : '18년 11% → '19년 15%(+4%p) → '20년부터 21%(+6%p)

< 기존 지방소비세 11%p >		< 지방소비세 인상 10%p >	
5%p	6%p	4%p	6%p
소비지수 x 가중치(1:2:3)	취득세 감소분 보전 등	'19년 인상	'20년 인상
(현행대로 처리)		(1단계 재정분권)	



< 지방소비세 인상분 10%p >



붙임2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흐름

(국 세) 부가가치세 총액의 25.3% **세무서장·세관장**

↓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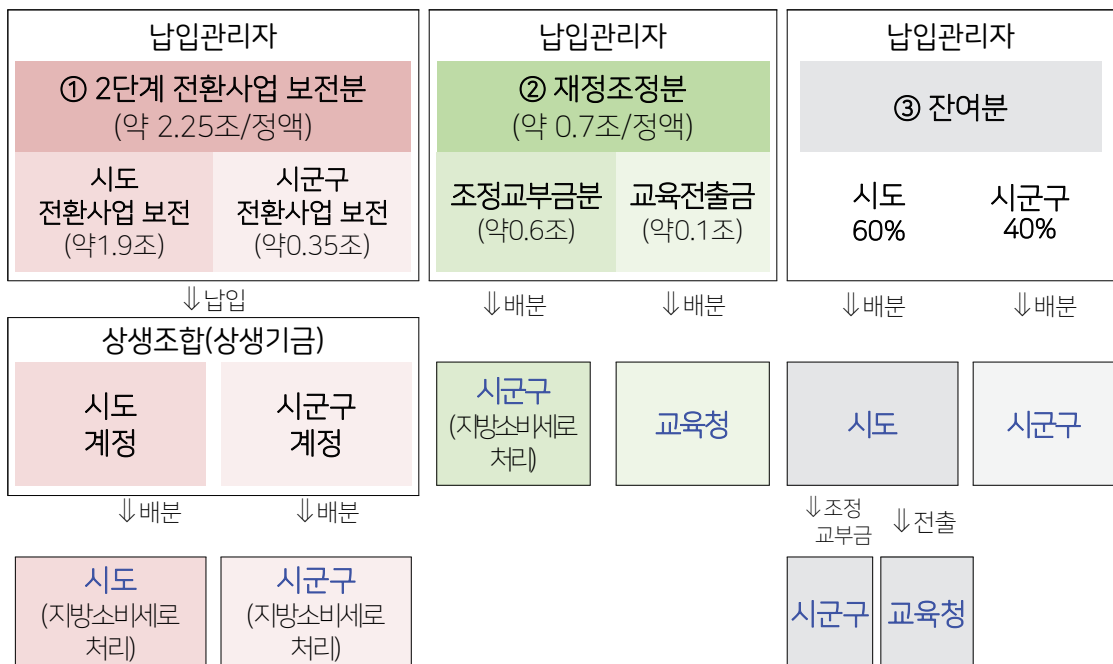
(지방세) 지방소비세 25.3% **납입관리자**(1년 단위로 1개 시·도 지정)

※ 지방소비세 세율 : '21년 21% → '22년 23.7%(+2.7%p) → '23년부터 25.3%(+1.6%p)

< 21년 지방소비세 21%p >			< 지방소비세 인상 4.3%p >	
5%p	6%p	10%p	2.7%p	1.6%p
소비지수 x 가중치(1:2:3)	취득세 감소분 보전 등	1단계 전환사업 보전분, 재정조정분 등	'22년 인상	'23년 인상
(기존)			(2단계 재정분권)	



< 지방소비세 인상분 4.3%p >



2. 전환사업 보전 기준 및 보전 방법

1 전환사업 보전 기준

○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규모만큼 보전*함이 원칙이며, 일부 사업은 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배분

* 1단계 전환사업 보전기준 : '19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규모
2단계 전환사업 보전기준 : '21년 국고보조사업 국비 규모

○ 매년 자치단체의 사업수행 적정성, 집행실적, 광역-기초 분담비율 등을 평가하여 자치단체별 보전규모를 일부 조정

2 전환사업 보전 방법

○ 전환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단체별 보전규모 사전통지(행안부→자치단체)

○ 자치단체 이의신청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체별 최종 보전규모 및 관련자료 송부 (행안부→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지역상생발전기금 기능이양계정을 통해 보전금 지급 (납입관리자→자치단체)

3 전환사업 운영기준

○ 전환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원으로 지방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운영

○ 자치단체는 전환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 다만,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예규)」을 적용

3. 전환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 전환사업 세입예산

- 자치단체 세입예산 편성 시, 자치단체별 보전규모 만큼 추가 세입예산으로 반영,
세입 과목은 '지방세(지방소비세, 111-08)'로 편성

▶ (예시) A자치단체의 '23년 전환사업 국비 규모가 10억원일 경우,
'23년 당초예산에 10억원 재원보전을 예상하고 지방세로 세입예산 추가 편성

- 시군구 직접사업은 시군구로 직접 보전*
* 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전(지방소비세로 편성)

▶(참고) 전환사업 중 사업추진 방식별 재원구성 현황

- 시도 직접사업 : 재원보전금 + 시도비 ⇒ '시도비'로 편성
- 시도 보조사업 : 재원보전금 + 시도비 + 시군구비 ⇒ '시도비 + 시군구비'로 편성
- 시군구 직접사업 : 재원보전금 + 시군구비 ⇒ '시군구비'로 편성
- (시도가 일부 보조하는 시군구 직접사업) 재원보전금 + 시도비 + 시군구비 ⇒ '시도비 + 시군구비'로 편성

2 전환사업 세출예산

- 예산편성 방법
 - 전환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고, 세부사업 하위에 정보관리 사업은 전환사업
만으로 한정하여 구성 편성
 - ※ 전환사업과 자체사업은 세부사업 단위에서 분리하여 작성

<전환사업 예산편성 예시>

'21년 기준(이양 전)			⇒	'23년 기준(이양 후)		
세부 사업	신중년사회공헌			세부 사업	신중년사회공헌	☑ 전환사업(2-1)
부기 사업	A신중년사회공헌	(국고 보조 사업)		정보관리 사업	A신중년사회공헌(전환)	
	B신중년사회공헌 *	(자체 사업)		세부 사업	신중년사회공헌	□ 전환사업
* 순수 자체재원으로 추진한 사업				정보관리 사업	B신중년사회공헌(자체)	

- 사업명은 기능이양 이전 사업명과 동일하게 유지(단, 신규사업은 예외)

○ (계속사업) 기능이양 이전부터 계속 추진되는 전환사업은 기존 사업계획, 사업지침 등에 따라 세출예산 계속 편성(사업별 규모 변경가능)

- (시도비보조율) 기능이양 이전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전한 경우, 기존 보조율 유지(기존 '국비:시도비:시군구비' 보조비를 유지)

- ▶ (시도 보조사업) 이양 전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이양 후 '시도비(보전금+시도비) : 시군구비' 비율 유지
 - ▶ (시도가 일부 보조하는 시군구 직접사업*) 이양 전 시도비 비율만큼 시군구 보전 필요
 - * '유기질비료', '문화관광해설사' 사업 일부 자치단체에만 해당
- ⇒ 예산편성 현황 확인을 통해 보조율 위반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보전금 지급 시, 지방이양 전 보전금 지급 범위 준수하고, 시도비보조율 유지는 계속사업, 종료사업, 공모사업 등 모든 전환사업에 적용

▶(예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 (이양 전)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단체별 차등비율지원
- (이양 후) 시도에서 전환사업 추진 시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단체별 차등비율로 지원

붙임3

전환사업 분야별 사업 구분

1 1단계 전환사업 : '20년 이양, 39개 사업, 35,680억원

분야	부처	세부사업명
국토 및 지역개발	국토부(균특)	대중교통지원
	국토부(균특)	지역거점조성지원
	국토부(균특)	지방하천정비
	국토부(균특)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
	국토부(균특)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시군구)
	행안부(균특)	소하천정비(시군구)
	여가부(균특)	청소년시설확충
	산업부(균특)	지역특성화산업육성지원
	중기부(균특)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환경부(균특)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
	고용부(균특)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농림해양 수산	농식품부(균특)	농업기반정비
	농식품부(균특)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식품부(균특)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식품부(균특)	반려동물산업육성
	농식품부(균특)	일반농산어촌개발(시군구)
	해수부(균특)	어업기반정비
	해수부(균특)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해수부(균특)	수산물가공산업육성
	해수부(균특)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해수부(농특)	낙시산업선진화
	해수부(농특)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산림청(균특)	산림경영자원육성
	산림청(균특)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산림청(균특)	임도시설
	농진청(균특)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문화 및 관광	문체부(균특)	관광자원개발
	문체부(균특)	문화시설확충및운영
	문체부(균특)	지방문화사업기반조성
	문체부(균특)	지역문화행사지원
	문체부(문화진흥기금)	예술의관광자원
	문화재청(균특)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환경	환경부(균특)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환경부(균특)	생태하천복원사업
	환경부(균특)	자연환경보전및관리
	환경부(균특)	폐기물처리시설확충(제주)
	환경부(균특)	생태휴식공간확대
	해수부(균특)	해양및수자원관리
	해수부(일반회계)	연안관리

■ 2단계 전환사업 : '22년 또는 '23년 이양, 41개 사업 22,521억원

분야	부처	세부사업명
일반 공공행정	행안부(균특)	지방이양사무지원
국토 및 지역개발 / 환경	환경부(균특)	상수도시설확충관리
	행안부(균특)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행안부(균특)	위험도로구조개선
	해수부(균특)	지방이양항만지원
	해수부(균특)	특행기관지방이전운영지원
	해수부(교특)	여객터미널운영
	국토부(균특)	주차환경개선지원
농림해양 수산	농식품부(농특)	농식품소비정책및건강한식생활확산
	농식품부(농특)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농식품부(농특)	친환경농자재지원(시군구)
	산림청(일반)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균특)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농진청(균특)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
문화 및 관광	문체부(관광기금)	문화관광해설사육성(시군구)
	문체부(일반)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체부(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
	문체부(균특)	문화시설확충및운영
	문체부(균특)	체육진흥시설지원
	해수부(일반)	해양관광육성
사회복지	복지부(일반)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복지부(일반)	공공형어린이집
	복지부(균특)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복지부(건증기금)	노인건강관리
	복지부(건증기금)	암환자지원
	복지부	양로시설운영지원
	복지부(건증기금)	모자보건
	복지부	노숙인등복지지원
	복지부	사회복무제도지원(시군구)
	고용부(균특)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고용부(일반)	신종년사회공헌활동지원(시군구)
	행안부(균특)	지역공동체일자리
	여가부(일반)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청(일반)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경찰청(일반)	아동청소년보호및수사활동
	경찰청(일반)	여성대상범죄예방및수사활동
	경찰청(일반)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일반)	교통안전교육홍보
	경찰청(일반)	교통안전활동
	경찰청(일반)	교통과학장비관리

3 집행 원칙

- 전환사업 보전 목적에 반하는 재정지출 금지
 - 전환사업 보전금은 그 목적에 맞게 재정지출을 하여야 함
- 전환사업 보전금은 이월 최소화
 - 전환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당해연도에 집행이 원칙이며, 보전금 반납 발생 시 각 단계별 전환사업으로 편성
 - 공모사업은 조속히 공모절차를 완료하여 시군구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
- 전환사업 근거 법령 준수
 - 전환사업은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 전환사업 보조비율 준수
 - 전환사업은 이양 전 시도비-시군구비 보조비율을 준수하여 집행
- 적정 인건비 편성·지출
 - 해당 사업을 규율하는 법률 및 지침에 따른 인건비 집행
- 신청에 의한 지원금 사업은 지출 원인이 발생한 순으로 집행
 - 지원 대상자 및 민간수행기관에 대한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4 집행 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전환사업 성과평가 기준

1 세부 평가기준

1. 적정투자(편성) 여부

- (원칙)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전환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확인
- (계속사업) 기존 전환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
 - ※ 전환사업이 단년도 계속사업인 경우 신규사업으로 판단
- (신규사업) 자치단체 전환사업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확인

2. 집행실적

- 차세대통합지방재정시스템에서 전환사업 속성 및 단계정보 표기된 사업을 추출하여 평가대상 확정 후 연중 집행실적 점검 및 별도 관리
- 성과평가에 집행실적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미집행액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집행 관리 강화

3. 보조율 준수여부

- 이양 전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간 보조율을 기준으로 전환사업 예산의 보조율 적정성 확인

사업 구분	이양 전	이양 후	확인 사항
시도보조사업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시도비 (=보전금+시도비) : 시군구비	· 이양 후 시도비 비율이 이양 전 '국비+시도비' 비율보다 낮지 않아야 함
시도가 일부 보조하는 시군구직접사업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시도비 : 시군구비 (=보전금+시군구비)	· 이양 후 시도비 비율이 이양 전 '시도비' 비율보다 낮지 않아야 함

- 신규사업은 해당 사업의 이양 전 보조율을 참고하여 준수여부 확인
- 기능 이양 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준수여부 확인

4. 인건비 적정 편성·집행 여부

-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은 근거 법률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고용의 연속성·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편성 및 집행

* (7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제도 지원, 노숙인 시설운영, 지방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운영지원, 산림서비스도우미

** 최저임금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2 결과반영

- 적정투자 여부, 보조율 준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은 다음연도 보전금 규모에서 조정
- 성과평가 결과 재원보전 조정 등을 통한 보전금 잔여분은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에 따라 재배분
 - ※ 미흡등급에서 감액한 보전금을 우수등급 자치단체에 배분
 - ※ 당해연도 감액이 일정 규모(각 단계별로 보전금의 1%) 이하인 경우, 차년도 성과평가에 따른 감액 일부를 추가로 배분할 수 있음
- 전환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만족도 상승,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개발 등을 기준으로 전환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 부여

3 사업 종료 후 정산

- 전환사업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이므로 사업 종료 후 정산은 각 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칙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
 - ※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전환사업 시행 이전에 시작하여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업은 소요 재원을 구분하여 정산

▶ (예시) A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건립 사업이 '18년에 착공하여 '22년에 준공된 경우, 국고보조금과 자체 재원을 구분하여 사업비 정산

2018년~2019년(국고보조금)	2020년~2022년(자체재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이양 전 중앙부처 지침	각 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칙

5. 전환사업 예결산 심의 활용 포인트

- (개념) 전환사업은 1단계 및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이라 함)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을 말함

■ 집행 현황 측면 검토

-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페널티 적용**으로 보전금 감액 되었는지 검토
 - 전환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당해연도에 집행이 원칙
- **전환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 만족도 상승,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개발 등 전환사업 우수사례 발굴 노력 검토(우수사례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은 근거 법률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고용의 연속성·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편성 및 집행 되었는지 검토
 - * (7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노숙인 시설운영, 지방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운영지원, 산림서비스도우미

■ 보조비율 측면 검토

- 이양 전 「국비:시도비:시군구비」보조율이 **전환사업 후 보조율 적정성** 유지되었는지 검토
 - 기능 이양 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준수여부 검토
 - 신규사업은 해당 사업의 이양 전 보조율을 참고하여 준수여부 검토
- ⇒ **예산편성 현황 확인**을 통해 보조율 위반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보조율 준수여부>

사업 구분	이양 전	이양 후	확인 사항
시도보조사업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시도비 (=보전금+시도비) : 시군구비	· 이양 후 시도비 비율이 이양 전 '국비+시도비' 비율보다 낮지 않아야 함
시도가 일부 보조하는 시군구직접사업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시도비 : 시군구비 (=보전금+시군구비)	· 이양 후 시도비 비율이 이양 전 '시도비' 비율보다 낮지 않아야 함

Ⅱ. 정책 동향

- ①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 (기경위)
- ②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 일본 미야코노조시 고향 납세 제도 (행문위)
- ③ 앤데믹 시대, 장애인 돌봄의 한계와 향후 돌봄의 방향 (복환위)
- ④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농해위)
- ⑤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방안 (건소위)
- ⑥ 학생의 심리정서 성장 지원을 위한 과제 (교육위)



1.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 현황과 전망

■ 주요 제장지표 변화와 추이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경제성장률(GDP)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지방통합재정지출 역시 연평균 7.0% 성장 추이
 - 2013년~2022년 GDP 연평균성장률 2.6%, 통합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6.6%
 - 최근에는 중앙재정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로, 지방재정은 재정 분권 추진에 따른 세율 인상과 자산의 가치상승 등에 기인하여 규모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규모는 최근 10년간('13년~'22년) 연평균 증가율 7.0% 수준 확대, 교육자치단체도 연평균 5.4% 증가

[표 1] 주요 경제·재정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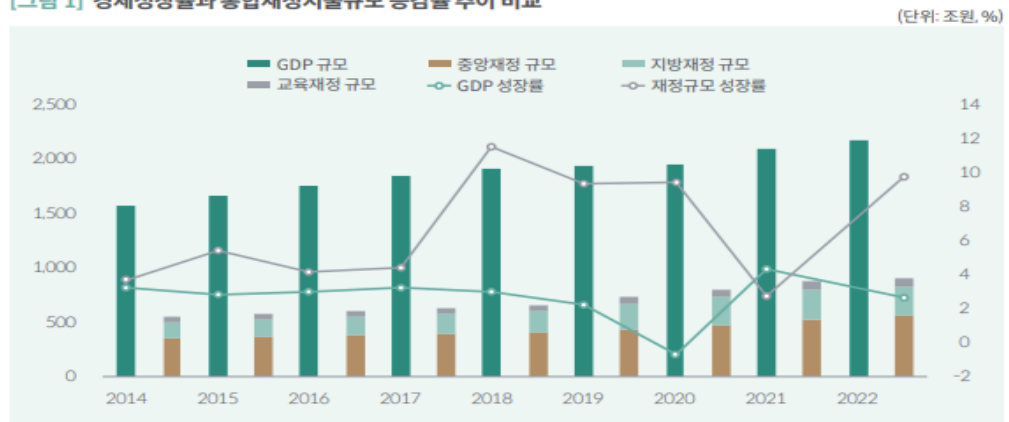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1. GDP규모(실질GDP)	1,562.7	1,658.0	1,760.8	1,852.7	1,918.7	1,968.8	2.6
2. 통합재정규모(A+B+C)	547.8	597.8	649.8	791.6	889.2	975.3	6.6
2-1. 중앙정부(A)	342.0	375.4	400.5	469.6	558.0	607.7	6.6
2-2. 지방자치단체(B)	154.4	168.1	190.2	252.7	259.4	284.9	7.0
2-3. 교육자치단체(C)	51.4	54.3	59.1	69.3	71.9	82.7	5.4

주: 각 연도 본예산(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지출액(총지출)

자료: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토대로 작성

[그림 1] 경제성장률과 통합재정지출규모 증감률 추이 비교



■ 최근 지방재정 변화(세입측면)

- 최근 세입측면에서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추세는 완화되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9.5조원¹⁾ 감소
 - 2017년 이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노력 등으로 자체·이전수입 모두 증가
 - 자체수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8년 11% → '23년 25.3%)과 과세대상 자산 가치상승 등으로 증가, 이전수입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에 기인
 - 2023년은 세수 결손이 예상되어 당초 계획보다 수입의 감소 폭 확대 예상

[표 2] 지방자치단체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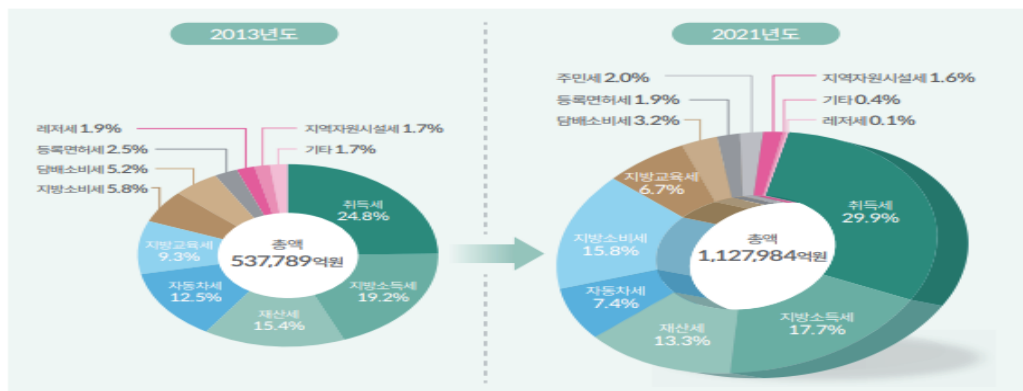
(단위: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체수입	106.4	110.1	117.1	128.9	142.8	143.9	140.0
- 지방세	80.4	84.3	90.5	102.0	112.8	112.4	115.3
- 세외수입	26.0	25.8	26.6	26.9	30.0	31.5	24.7
이전수입	92.2	99.6	119.4	137.0	144.9	164.0	158.4
- 지방교부세	44.4	49.0	57.7	50.3	59.2	81.0	75.3
- 국고보조금	47.8	50.6	61.7	86.7	85.7	83.0	83.1
자체수입+이전수입	198.6	209.7	236.5	265.9	287.7	307.9	298.4

자료 : 연도별 지방재정연감(2021년까지는 결산액, 2022년 최종예산, 2023년 당초예산 순계 기준)

- 자체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구조는 기존 재산과세(재산세, 취득·등록세) 중심에서, 2021년 이후 소비·소득과세가 재산과세와 유사한 비중으로 성장

[그림 2] 지방세 수입 세목별 비중 변화



자료: 각 연도 「지방재정연감」을 토대로 작성

1) 2022년 최종예산 대비 2023년 당초예산 세입 기준

■ 최근 지방재정 변화(세출측면)

- 세출 역시 세입에 비례하여 증가,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17~'23, 46.8조원 증가), 2023년 당초예산 기준 세출예산의 31.5% 비중

[표 3]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세출예산 추이

(단위: 조원, %)

분야	2017		2020		2023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사회복지	49.5	25.6	75.1	29.7	96.3	31.5
인력운영비	25.9	13.4	31.5	12.5	36.5	12.0
환경	19.1	9.9	25.7	10.2	29.3	9.6
교통및물류	17.3	8.9	20.6	8.1	24.6	8.1
국토및지역개발	13.2	6.8	17.5	6.9	17.2	5.6
농림해양수산	12.3	6.4	15.8	6.2	20.4	6.7
일반공공행정	11.9	6.2	13.3	5.3	16.6	5.4
교육	11.7	6.0	14.0	5.5	16.2	5.3
문화및관광	9.8	5.1	12.1	4.8	14.3	4.7
예비비	4.9	2.5	4.5	1.8	4.6	1.5
기타	17.8	9.2	23.0	9.1	29.5	9.6
계	193.2	100	253.2	100	305.4	100

주: 기타에는 기본경비,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보건, 과학기술 등이 포함됨.

자료: 각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토대로 작성

- 자치단체 재정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증가 폭이 상당하여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이 감소, 재정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출권 향상에 한계
- 최근 팬데믹 대응수요와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크게 확대, 2019년부터 지방 정책사업비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비중 역전, 지출권 제약

[표 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출예산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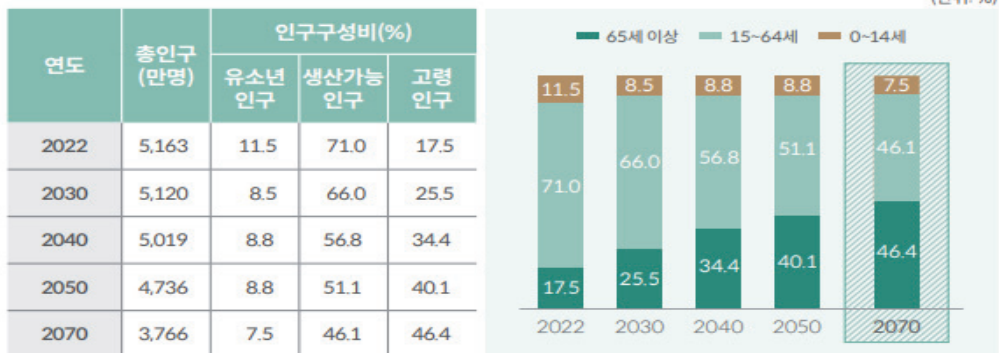
연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자체사업비율		
2017	78.1	79.9	50.6	35.2	193.2
2020	110.4	102.7	48.2	40.1	253.2
2023	139.8	115.6	45.4	50.0	305.4

자료: 각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토대로 작성

■ 지방재정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저성장 기조(한국은행, 경제성장률 '23년 1.6%, '24년 2.4% 전망)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 구성비도 역전될 것으로 전망

[그림 3] 연령대별 인구구성 추계



자료: 통계청(2022),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70년」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지방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소멸 가속화 등 대응이 필요한 재정 현안은 누적
 - OECD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력 감소를 유발, 주요 지방세 세원인 지방소득세·소비세 감소를 조장하고 재산과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복지 의무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력 악화와 함께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
-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효율성 강화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적립성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면밀한 상환 계획에 근거한 적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여력 확보 필요
 -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과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방식 합리화, 지방세 과목구조 개편, 교부세의 배분기준 재설계 등 노력 필요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제62호) 재작성(2023. 9월)

2.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 일본 미야코노조시 고향 납세 제도

■ 미야코노조시의 고향 납세

○ 미야코노조시 현황

- 미야자키현 남서부, 인구 약16만명
- ‘일본 제일의 축산 고장’으로 맛 좋은 육류와 지하수로 만든 소주로 유명
- 2014년 이후 오랜 기간 일본 고향 납세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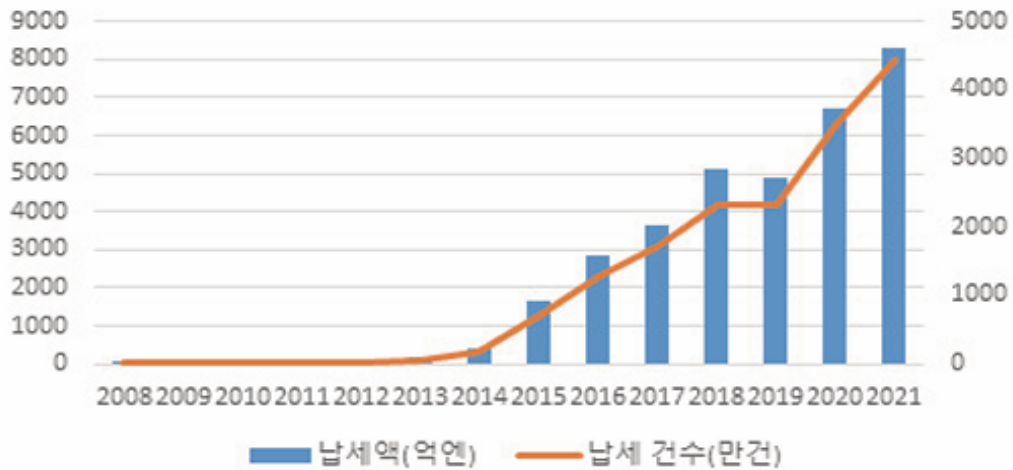
○ 미야코노조시 고향 납세 추이

미야코노조시의 고향 납세액 · 납세 건수 추이				
년	납세액	전국 순위	납세 건수	전국 순위
2021	약 146억엔	2위	약 69만건	5위
2020	약 135억엔	1위	약 60만건	4위
2019	약 106억엔	2위	약 50만건	1위
2018	약 95억엔	6위	약 63만건	2위
2017	약 74억엔	3위	약 52만건	2위
2016	약 73억엔	1위	약 52만건	1위
2015	약 42억엔	1위	약 28만건	1위
2014	약 5억엔	9위	약 2만건	10위
2013	약 946만엔	289위	약 38건	562위

- 미야코노조시는 일본의 고향 납세에 참여하는 1,700개 이상 지자체 중 꾸준히 상위권 납세액과 납세 건수 기록해왔으며, 최근 2021년에는 납세액 약 146억엔, 납세건수 약 69만건으로 최고치 기록
- 고향 납세 사이트 운영사들과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기틀을 짜기 시작한 2014년 이후부터는 이용 실적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자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야코노조시는 좋은 실적 기록

■ 미야코노조시의 고향납세제도 전략 변화

일본 전국의 고향 납세액 추이



(1) 대외적인 PR

‘고향 납세 일본제일’ 칭호를 획득함으로써 ‘고향 납세’하면 ‘미야코노조시(고기와 소주)’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하여 미야코노조시의 대외적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지역 경제의 활성화

고향 납세의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답례품의 확보도 필요하게 된다. 미야코노조 시내의 여러 사업자가 답례품의 제공처가 됨으로써 고향 납세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답례품 출하량도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3) 시의 수입 증가

기부액의 상승은 지자체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4) 직원의 의식 개혁

당초 시청 내에서도 담당 부서 이외의 직원은 고향 납세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지만, 직원 모두가 ‘일본 제일’이라는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었던 점, 이후에도 ‘일본 제일’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켜 시청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서 일본 제일을 목표로 하는 기운이 조성되는 등 다양한 상승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 적극적인 홍보 전략

- 이케다 시장의 도시 지명도 향상과 '일본 제일의 고기와 소주' 타이틀을 위한 대대적 홍보 정책
- 2014년 4월 '미야콘조(みやこんじょ, 미야코노조의 것이란 뜻의 사투리) PR과'를 신설하여 미디어 판매 및 이벤트 개최



○ 홍보에 고향 납세를 활용

- 고향 납세를 미야코노조시로 관심을 끌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전환
- 재원 확보를 위해 고향 납세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미야코노조시의 지명도 제고를 위한 도구라는 점에 중점
- '일본 제일의 고기와 소주 세트', '미야자키규 한 마리 통째로 500만 엔', '소주 1년 치(365명) 배달' 등 기존의 특산품을 내세운 특가 기획을 마련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 고향 납세 활용의 활용방침

- 미야코노조시의 고향 납세는 기부자가 <육아 지원>, <협동 마을 만들기와 중심 시가지 활성화>, <환경·삼림 보전>, <스포츠·문화 진흥 사업>, <고령자 지원>, <재해 지원, 구제역(가축 전염병) 대책>, <인구 감소 대책>, <지정 없음(시장의 권한에 맡김)>의 8개 메뉴 중에 사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하면 그에 맞게 활용해 나가는 구조

미야코노조시의 2020년도 고향납세 실적		
기부금의 사용처	건수	금액
1. ふるさと子ども支援 <어린이 지원>	295,373건	6,231,426,712엔
2. ふるさとまちづくり支援 <도시 조성 지원>	20,848건	453,850,500엔
3. ふるさと環境支援 <환경 지원>	39,321건	859,185,500엔
4. ふるさとスポーツ・文化振興支援 <스포츠 문화 진흥 지원>	14,416건	390,962,500엔
5. ふるさと長寿支援 <고령자 지원>	16,185건	357,198,000엔
6. ふるさと災害対策支援 <재해 대책 지원>	39,892건	884,281,500엔
7. ふるさと人口減少対策支援 <인구 감소 대책 지원>	13,903건	298,666,500엔
8. その他(市長おまかせ) <기타 (시장의 권한에 맡김)>	166,246건	4,025,163,867엔
합계	606,184건	13,500,735,079엔

- 고향 납세를 활용하는 사업의 계획이나 실적 등은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어 고향 납세로 얻은 수입이 어떤 형태로 시민 생활에 환원 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
- 고향 납세 기부자는 시외 거주자이지만, 답례품의 주요 제공처는 지역 사업자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의 환원 상황 등 고향납세로 얻은 수익금의 흐름을 확실히 공표하고 성의있게 대응해 나가는 것은 고향 납세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

■ 고향 납세의 발전에 필요한 것

- 시장의 리더십과 시의 발전을 염원하며 제도 운용에 종사하는 담당 부서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고, 특히 지역 사업자와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던 것이 큰 요인
- 고향 납세 실적이 향상됨에 따라 답례품 확보라는 과제가 발생했을 때, 고향 납세의 답례품을 ‘매입’이 아닌 ‘재고 확보’라는 형태로 사업자에게 협력을 얻음.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우리 시를 위해서라면 협력하겠다’ 라는 현지 사업자의 이해가 있었기에 지금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음
- ‘사랑받는 마을만들기’ 정신이 고향 납세 발전의 기본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2022. 9월] 재작성

3. 엔데믹 시대, 장애인 돌봄의 한계와 향후 돌봄의 방향: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 팬데믹의 경험과 장애인

-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면서, 장애인에게 돌봄이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음
 - 장애인은 팬데믹 상황에서 비장애인보다 더 취약하였음. 돌봄은 장애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둔 가구에 미치는 영향도 커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 2022년 말 등록장애인은 약 26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 수준임. 장애인구 중 32.1%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이러한 돌봄 필요도는 더욱 높아질 예상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은 기존의 생태계를 훼손시켰으며, 훼손된 생태계는 또 다른 팬데믹의 가능성을 이전보다 더 높여 놓았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장애인 돌봄의 한계

-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은 장애인의 취약성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냄
 - 세계적으로 장애인은 방역과 검진, 자가 격리 및 확진 시 대체 자원의 부재 등 여러 불평등 및 배제를 경험하였음
 - 세계 각국은 팬데믹 상황을 미리 고려하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필품 구입, 방역 물품 공급, 사회적 거리 두기, 검진, 치료 과정에서 정보 접근과 방송 시청의 권리 문제, 확진 시 병원 입원 등에 대한 지원에서 장애인은 더욱 취약하였음
 - 영국의 장애 상태별·성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2~4배 높았고, 기능제한 수준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됨

- 미국 내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에서 8배까지 높다는 보고도 있음

- 이처럼 장애인은 재난 상황에 취약하며 돌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현재의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는 한계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2020)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부모 1,174명 중 97%는 장애인복지관이 휴관하여 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음. 이러한 돌봄 공백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장애인에게 돌봄은 일상적 삶 영위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연속적 제공이 중요함

-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 제공량을 결정하면 이용자는 표준화된 서비스 내용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구조로 제공됨
 - 이러한 ‘제도적 돌봄’ 체계는 공공 부문의 속성상 관료제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고,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대응성과 유연성을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하기 어려움

지역사회 내 장애인 돌봄 서비스 체계

지역사회 내 장애인 돌봄 서비스		
국고보조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부모 상담 지원, 가족 휴식 지원 등)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건강주치의, 치과주치의, 재활병원] •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통합돌봄(장애인 분야) 시범사업 • 탈시설 장애인 지원 시범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장애인 분야) • 발달장애인지역센터 운영 • 장애아동지역센터 운영(일부 지역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지방이양사업	• 주간보호시설 운영 • 장애인 그룹홈 운영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 장애인복지관 운영(재활치료, 훈련 영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역 자체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서비스 •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지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장애인 지원주택 지원
지역사회 내 자생 자원	•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장애인 지원 사업, 지역사회 통합 사업 • 장애인복지관 운영(예: 스몰스파크 사업 및 웅심이 사업 등)	
지방정부 직접사업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위기 기간 동안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장애인의 돌봄에서 요구되는 연속성은 제도적 돌봄에서 공동체적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함

- 돌봄은 그 특성상 장애인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상의 돌봄 욕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어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제도적 돌봄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돌봄의 속성이 필요하고, 공동체적 돌봄에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돌봄과의 느슨한 연계, 연결이 필요함

제도적 돌봄과 공동체적 돌봄 특성

영역	기준	구분	사업 특성 혹은 사례
제도적 돌봄	서비스 공급 단위	개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집단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서비스
	정부 성격	중앙정부 주도	국고보조 서비스(전국 표준형)
		지방정부 주도	지방 이양 서비스 혹은 자체 서비스
	서비스 성격	직접 서비스	직접 돌봄 제공 서비스
		간접 서비스	자격 판정, 사례관리 등
	장단점	장점	예측 가능성, 안정성
		단점	경직성, 개별 욕구 부응성 부족
공동체 돌봄	돌봄 성격	직접	공동 생산적 돌봄(예: 마을장애인사랑방 운영)
		간접	이익 대변, 역량 강화, 옹호 등(예: 장애인부모회 자조모임)
	돌봄 주체 성격	당사자	당사자와 가족 돌봄(예: 돌봄 품앗이 모임)
		제3자	돌봄 당사자 외 돌봄(예: 주민 주도 장애 가족 일상 지원)
	제도와와의 연관성	거의 없음	제도적 연결 거의 없음
		느슨함	간접적이지만 제도와 연결(재정, 행정 지원 등)
	장단점	장점	융통성, 개별 욕구 부응적
		단점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

○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돌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와 가까운 곳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 복지 체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감독이 강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이 낮다는 지적이 주되게 제기되고 있음. 이는 하향식 정책 기획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임
- 그러나 지역 주민의 일상을 지원하는 사업의 기획력은 상황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과 이를 구현해 내는 것이 주요하므로 공공 부문이 지역 주민과 얼마나 점점(직간접적)을 가지면서 정책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짐
- 이 같은 접근은 특정 상황에서 공적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더라도, 장애인과 가까이 있는 정부, 이웃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면 적어도 최소한의 돌봄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 20세기 이후 선진국의 돌봄에서는 주민에게 더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공동체적 활동이나 움직임을 더 좁은 단위로, 그리고 지방 공공조직이나 인력과 연결하고 있음

- 영국은 제도적 돌봄 영역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 분산되는 분권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대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차원에서 이중분권(double devolution)의 경향성이 강조되고 있음
- 미국도 1970년대에 중앙집권적 복지 시스템보다 지방분권적 시스템을 내세우며 복지 효율화를 강조하는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 아래 돌봄의 책임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양하였음

○ 장애 정책의 지향성에 맞는 돌봄 체계의 이용자 중심성 강화가 필요함

- 전 세계적으로 장애 정책에서는 사회 모델 적용을 통한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강조되었고, 장애인 당사자의 통제와 선택, 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소통,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자주 만나고 어울릴 기회 확대가 강조됨
-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 서비스 발전 단계는 자립 모델에서 상호 의존 모델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장애 정책과 돌봄 서비스의 발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공동체주의적 접근 및 이용자 참여성의 강조임. 이제 이용자가 서비스 생산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개별 이용자의 욕구가 다루어지는 돌봄 방식을 지향해 나가야 함

■ 대안적 장애인 돌봄을 위한 과제

- 엔데믹 시대, 향후 장애인 돌봄은 상황에 대응하는 유연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체적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향후 장애인 돌봄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성(locality)을 강조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내 공동체성 강화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출처: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No.441(2023-9) 재작성(2023. 10월)

4. 전북 농업인력난,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자제로 해결하자

■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유치를 통해인력난을 해결해 왔음
- 특히,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E-9)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C-4, E-8)’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E-8)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행정·재정상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을 앞둔 전라북도농는 심각해져 가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자율성을 최대 활용하여 계절근로자제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도 내 계절근로자의 합법적·안정적 장기체류를 지원할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제안해보고자 함

<계절근로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체류자격	계절근로자 선정 방식	근로분야
E-8-1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농업
E-8-2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농업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	어업
E-8-4	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	어업
E-8-5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농업
E-8-6	기타(G-1) 자격으로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 추천	어업
E-8-99	언어소통 도우미 등 기타 보조 인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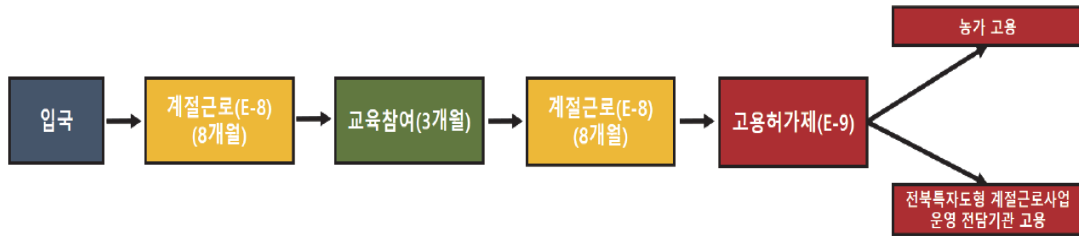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한계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번기의 부족한 노동력을 농가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으나,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 자주 발생하면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은 농가에게 농업인력에 맞춰 세워진 영농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가는 대체인력 수급에 따른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함
-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농협은 근로자 선발에서 민간 브로커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의 방안으로 현지에서 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행정·재정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 고용허가제(E-9)와 다르게 계절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로 입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근로자의 다소 짧은 체류기간은 무단이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무단이탈 문제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의 미흡함으로 발생하는 농업인과의 문화적 갈등임
- 계절근로자의 낮은 한국어수행능력, 한국문화 이해 부족, 낮은 작업 숙련도에 따른 체류 초기 고용주와의 의사소통 문제와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고용주-근로자의 갈등과 고용주의 낮은 만족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의 한계로 들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방향

-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는 계절성이 있는 농업 부문에서 단기간 고용되어 농업노동력을 제공하는 성실 계절근로자(E-8) 대상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임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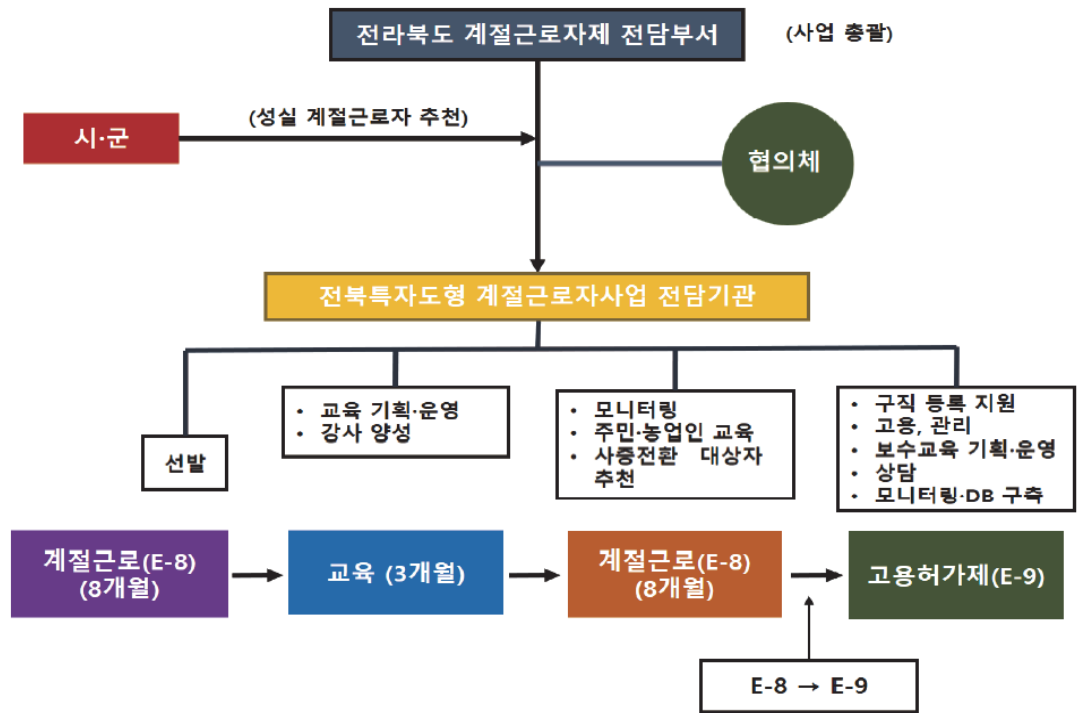


○ 전담부서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시·군이 유치한 계절근로자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법적 업무를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와 전담부서 설치·운영이 필요함
- 전담부서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계절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도내 계절근로자 DB를 구축하고 관리함

○ 전북특별자치도형 계절근로사업 협의체 운영

- 고용허가제(E-9) 사증으로 전환하여 전북 농촌지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적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협의체는 전북특화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계절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삶의 질 증진, 농업인력 부족 해소, 지역 활성화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함



출처: 전북연구원, 이슈 브리핑 Vol. 284(202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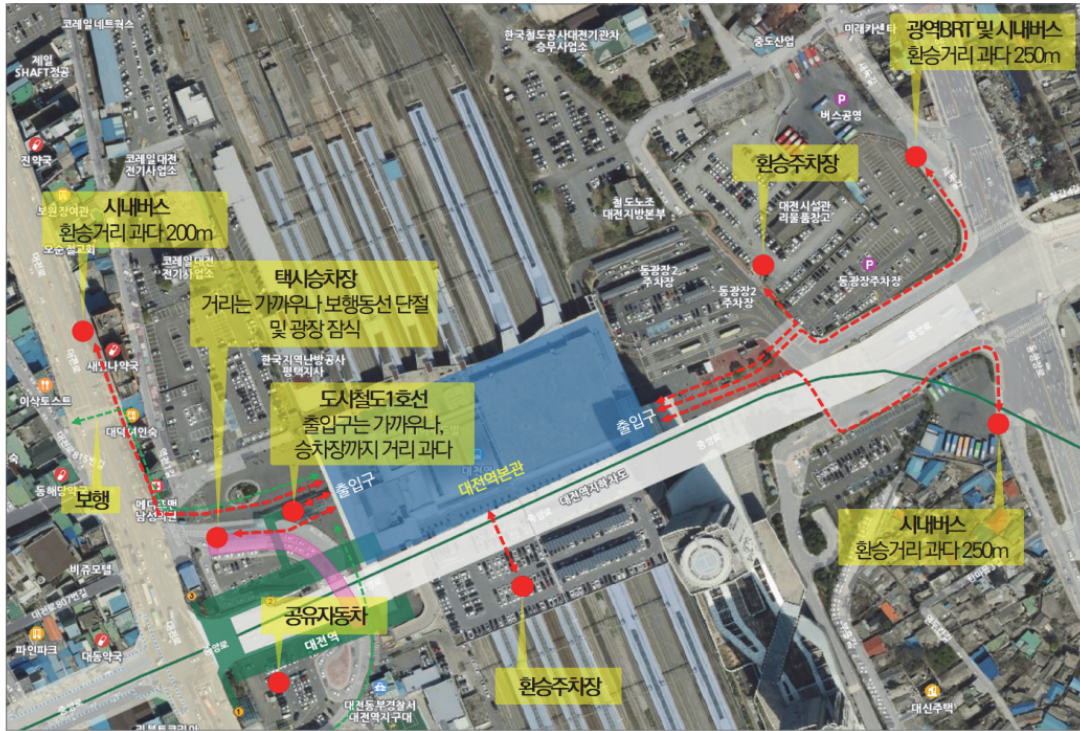
5.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방안

※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등장이 예상되며, 이러한 모빌리티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간의 연계(환승) 서비스가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 대전역 입지 현황

- (입지) 대전역은 다양한 교통 인프라(철도, 도시철도, 버스, BRT)가 있는 교통의 결절점으로, 현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대전 도심융합특구’, ‘대전 혁신도시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연계교통수단 현황) 철도는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1일(주말 기준) 242회 운행, 일 평균 이용객은 36,949명(승차 기준)임. 도시내 연계교통수단은 도시철도 1호선(지하철)과 광역BRT, 시내버스, 택시, 공유자동차, 공공자전거 등이 있으며, 대전-옥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추진 중임
- (환승여건) 대전역에는 다양한 연계교통수단이 있으나 탑승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환승거리도 길어 교통수단 간의 연계환승은 불편한 실정 → 교통약자에 대한 환승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평·집약적 환승체계 구축이 필요

대전역 환승체계 현황



- 현재 대전역 선상 환승주차장만 본관 대합실에서 가깝게 설치되어 있고, 다른 교통수단은 대전역 부지 바깥에 위치하여 환승거리가 먼 실정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다른 연계교통수단(BRT, 버스 등)도 본관(대합실)과 가까운 위치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대전역 광장 또한 차량이 진출입하여 보행동선이 단절되고, 택시승강장으로 인한 공간잠식으로 교통혼재 및 차량정체가 빈번한 실정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차량 진출입로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대전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철도(고속철도, 일반철도)를 기준으로 다른 연계교통수단 간의 환승거리를 산출하면, 도시철도 1호선의 환승거리가 약 350m로 가장 길며, 택시의 환승거리가 약 110m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연계교통수단 이용 비중과 이동 방법을 고려하여 평균 환승거리를 산출하면 평균 211m로 산출되며, 환승 서비스 수준(LOS)은 D 수준으로 분석됨

환승 서비스 수준(LOS)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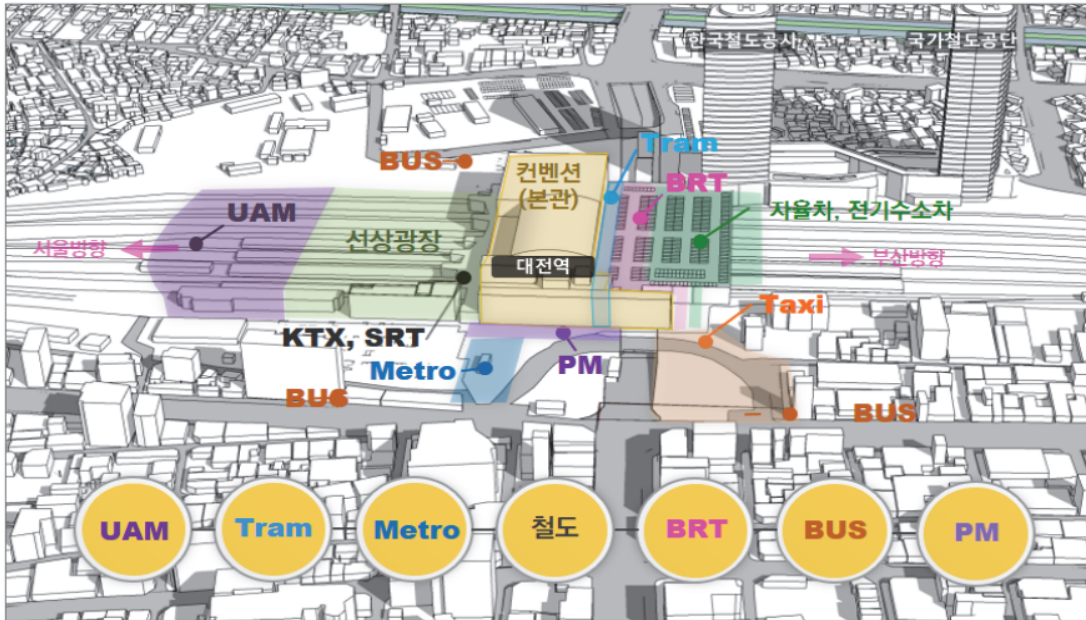
구분	환승거리(m)	환산거리(m)	비중(%)	가중평균 환산거리(m)
도시철도	350	300	30	211(3분 31초) (LOS D)
시내버스	260	260	30	
승용차	130	130	10	
택시	110	110	15	

주 대전역 철도이용객의 연계교통수단 이용 비중은 예상치 적용
국토교통부(2015),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적용

■ 대전역 MaaS Station 구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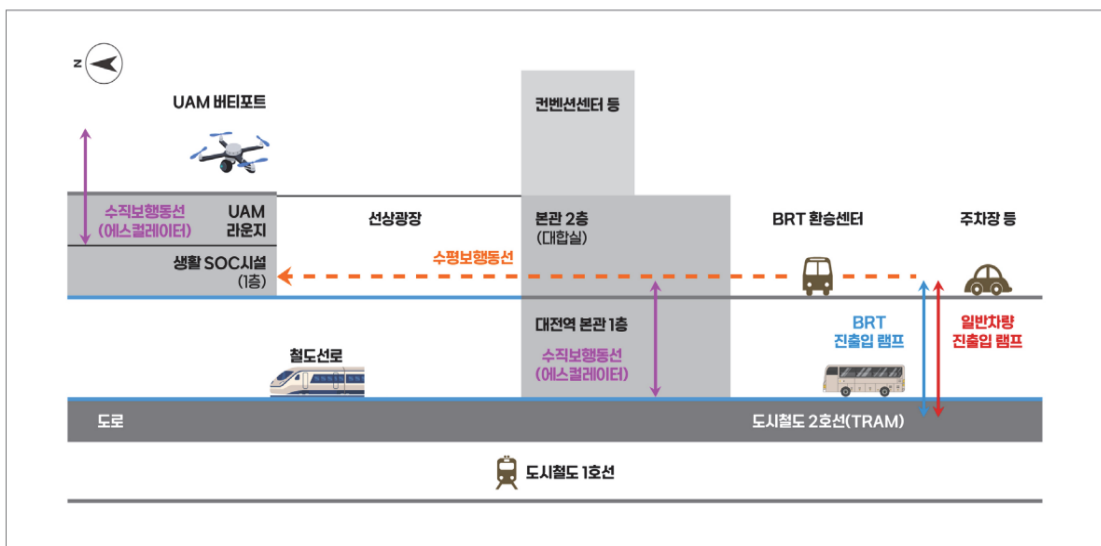
- (기본방향) ① 모빌리티 간의 가장 가까운 환승체계 구상 ② 환승 동선은 가급적 짧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상 ③ 교통기능 이외에 공원·광장 등을 조성하여 문화가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구상
- (시설배치 구상) 대전역 철도 모빌리티와 연계 모빌리티(UAM, 도시철도, 버스, 택시, PM 등)를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대전역 본관 대합실과 붙어 있는 철도부지(본관 북측·남측 선상 데크 활용)를 활용하여 환승시설을 구상
 - 북측 선상(서울방향)에 선상광장과 UAM 버티포트(착륙장, 주기장 등)를 입체적으로 구상하고, 남측 선상(부산방향)에 BRT 승차장, 주차장(전기차 충전소, 공유자동차 주차장 포함) 등을 구상하며, 서광장 및 동광장에 택시승강장, PM, 공유자전거 거치구역을 구상

대전역 MaaS Station 시설배치 구상



- (동선 구상) 보행동선은 대전역 본관 대합실에서 가급적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수직이동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상함. 차량 동선은 2층 BRT 승차장 및 주차장에 진출입 램프를 설치하되 대중교통(BRT)과 일반차량을 분리하여 혼잡을 최소화

보행 및 차량 동선 구상



- (디자인 기본 콘셉트 구상)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건축물 외부를 포함한 내부 공간구성을 하이테크 건축물로 디자인하는 한편, 친환경 제로에너지와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향

■ 기대효과

- (교통체계 개선) 대전역에 MaaS Station이 건설되면 직접적으로 이용객의 환승시간 단축(환승편의 개선) 및 통행시간 단축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대전역 환승 서비스 수준(LOS)은 MaaS Station 건설 후 환승거리가 35m(211→176m) 감소하여 D 수준에서 C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분석되며, 나아가 향후 UAM이 상용화될 경우 대전역 ↔ 청주공항 통행시간은 승용차 50분, 버스 123분, 광역철도 75분, UAM 16분 등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
- (지역사회 발전) 대전역에 MaaS Station의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생산 및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산업발전)임. MaaS Station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4,155억 원으로 생산유발효과 2,93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22억 원이며, 고용유발효과 1,260명, 취업유발효과 1,623명 등이며,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됨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Brief 2023 Vol3/No.2, 재작성(2023. 7.)

6. 학생의 심리정서 성장 지원을 위한 과제

■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가?

-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학생 성장과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타인과 상호 작용할 기회의 제약은 학생들의 인지역량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및 심리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어 온 학생의 사회·정서 문제에 대응하고,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해 ‘(가칭)학생 사회·정서 지원법’ 제정 필요가 제기됨
 - 학생의 사회·정서 문제가 더 이상 개인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
- 인간의 심리정서 상태(기쁨, 분노, 불안, 우울 등)는 매우 주관적이며 개인적이지만, 심리정서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의 결과는 지극히 사회적인 성격을 보임
 -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를 학생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영향 요인, 심리정서 상태, 영향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가정-학교-사회를 연계하는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가?

- 전통적으로 교육은 학생의 인지적 성장에 더 많이 집중해 왔으며,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임
 -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교과 교육과정과 평가는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의 핵심역량(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중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면 우리 교육이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을 잘 지원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임
 -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과 관련된 교육활동의 대부분은 학생의 심리정서에 대해 ‘성장’의 관점이 아닌 문제 예방과 처치에 집중하는 ‘문제’ 중심적 관점에서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가 심각한 이 시기에 문제 예방과 처치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학생의 심리정서 현황 분석 및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직원 2,869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와 지원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교직원들은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심리정서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충동·감정 조절이 안되는 학생들’과 ‘무기력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 학생의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지도 효능감은 평균 3.79점(5점 만점)
 - 경력 3년 미만 교직원들의 효능감(3.59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직종별로는 전문상담교사(4.10점)나 교육복지사(3.88점)에 비해 담임교사(3.71점)의 지도 효능감이 더 낮았음
- 대부분의 교직원들은 학생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정보를 자신과 동일한 직종에 있는 동료 교직원에게 얻고 있었음
 -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의 심리정서에 대한 지도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전문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기보다는 대부분 동료교사나 교내 전문상담교사에게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됨

■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관점의 전환: ‘문제’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 교과교육에서 심리정서적 성장을 직접적으로, 또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학생의 심리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교육활동은 문제 예방과 처치에 중심을 두고 있음

-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나 ‘위(Wee)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거나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처 중심의 활동들임
-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이 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은 자기이해, 감정조절,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술 습득과 적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 습득과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학생들의 인지 발달 과정에 맞추어 교과교육의 내용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심리정서적 성장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도 학생의 발달 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교과교육으로 다루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학생을 둘러싼 환경과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학생을 둘러싼 환경들이 서로 보완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내 전문인력 확충 및 교사의 심리정서 관리 역량 강화

- 교내에 학생의 심리정서적 성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충이 중요
-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심리정서 문제의 종류가 다양해짐과 동시에,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음
-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심리정서에 대한 교사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심리정서적 이슈를 잘 다룰 수 있는 교사의 효능감과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함
-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춰 교사 수도 감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이전에 비해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 수를 감축

하기보다는 교사의 심리정서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사의 역할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출처: 이범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재작성(2023. 9월)

Ⅲ. 충남도청 자체수입 징수현황('23. 9월말 기준)

○ (자체수입) '23년 9월말 기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징수액 2조 1,349억원

- 목표액(3조 361억원) 대비 77.4% 징수율 (※ 8월 징수율 72.4%)

- 전년동기 징수액 2조 3,805억원 대비 △315억원 감소(△1.3%)

○ (지방세) '23년 9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 2조 2,364억원

- 취득세는 7,844억원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6.6% 징수율(※ 8월 징수율 69.2%)

- 취득세 전년동기 징수액 8,320억원 대비 △476억원 감소

○ (세외수입) '23년 9월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액 1,126억원, 전년동기 대비 34억원 증가

('23. 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목표액 (A)	징수액 (B)	목표액 징수율 (B/A)	전년동기 징수액(C)	전년대비 증감	
						금액 (B-C)	비율 (B/C)
합 계		30,361	23,490	77.4	23,805	△315	△1.3
지방세	소 계	29,200	22,364	76.6	22,713	△349	△1.5
	취 득 세	10,074	7,844	77.9	8,320	△476	△5.7
	등 록 면 허 세	835	592	70.9	599	△7	△1.2
	레 저 세	200	167	83.5	156	11	7.1
	지 방 소 비 세	14,015	10,691	76.3	10,272	419	4.1
	지 역 자 원 시 설 세	1,157	963	83.2	1,007	△44	△4.4
	지 방 교 육 세	2,870	2,083	72.6	2,332	△249	△10.7
	지 난 년 도 수 입	49	24	49.0	27	△3	△11.1
세외수입	소 계	1,161	1,126	97.0	1,092	34	3.1
	경 상 적 수 입	270	255	94.4	283	△28	△9.9
	재 산 임 대 수 입	21	18	85.7	19	△1	△5.3
	사 용 · 수 수 료	69	51	73.9	56	△5	△8.9
	사 업 수 입	71	11	15.5	71	△60	△84.5
	징 수 교 부 금 수 입	68	85	125.0	86	△1	△1.2
	이 자 수 입	41	90	219.5	51	39	76.5
	임 시 적 수 입	884	862	97.5	802	60	7.5
	재 산 매 각 수 입	23	28	121.7	114	△86	△75.4
	자 치 단 체 간 부 담 금	199	135	67.8	197	△62	△31.5
	보 조 금 반 환 수 입 등	662	699	105.6	491	208	4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	9	128.6	7	2	28.6
	과 징 금 등	7	9	128.6	7	2	28.6

- ▶ 본 정보지에 게재된 글과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문의 개별 사안은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의회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 본 정보지는 예산정책 관련 동향을 수집·가공한 자료이므로, 정보지를 인용하시기 전에 원출처를 확인하신 후 원문을 바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